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가단1036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환철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권대희, 김상헌, 박현미, 이승호, 이재광,

정원균, 황성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변 론 종 결 2022. 12. 2.

판 결 선 고 2023.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한 2021. 1. 21.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7. 4. 27. C에게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11.4%, 연체이자율 연 23.45%로 하여 2,4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2018.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8. 6. 1.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10143호로 이 사건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3. ‘C은 원고에게 28,282,772원 및 그 중 21,728,272원에 대하여 2019.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리고 위 지급명령은 2019. 3. 5. 확정되었다.

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9.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9.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20. 10.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 및 F, G, H, I은 2021. 1. 2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 25. 2020. 10.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C은 2020. 11. 19. 대구가정법원에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대구가정법원 2020느단2190호), 위 법원 2020. 12. 22.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이 망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을 받을 수 있음에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이견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1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반환으로 17,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바인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항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C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됨으로써 상속포기의 효과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이미 발생하였고 C은 이 사건 분할협의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분할협이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현자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북구 , 동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17층아파트

지층 210.26㎡, 1층 229.53㎡, 2층 내지 4층 각 220.05㎡, 5층 504.22㎡, 6층 내지 11층 각 217.53㎡, 12층 내지 17층 각 154.80㎡

부속건축물

☐ 동 지하2층 2038.08㎡ 지하주차장, 지하1층 1850.28㎡ 지하주차장, 1층 25.76㎡ 지하주차장(계단)☐ 동 지하1층 1494.28㎡ 지하주차장, 1층 25.76㎡ 지하주차장(계단)☐ 동 지하1층 606.72㎡ 전기, 기계실, 1층 29.87㎡ 전기, 기계실☐ 동 1층 143.25㎡ 관리사무실, 주민공동시설, 2층 137.25㎡ 독서실☐ 동 1층 74.40㎡ 노인정☐ 동 1층 23.04㎡ 경비실☐ 동 1층 30.00㎡ 재활용품창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대구광역시 북구 대 12924㎡2. 대구광역시 북구 대 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51.49㎡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2977분의 25.5512 끝.

